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신념과 경험의 변화 -2001년과 2011년 비교 연구-

장 연 진*

(한양사이버대학교)

김 진 숙**

(한양사이버대학교)

구 혜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과 2011년에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윤리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에 초점을 두고, 현재와 과거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조직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경험의 차이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직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256부를 분석하였고, 2001년 발표된 유사한 설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사회복지사들은 10년 전보다 신념이나 경험에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관계의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허용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에서도 성별이나 교육수준, 기관형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였으나 차이의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윤리교육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회복지사, 전문직 윤리, 윤리의식 변화, 이중관계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계는 클라이언트와 전문 사회복지사 간에 정서적인 교감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전문성, 의도적인 목적성, 시간제한성, 권위성 등의 특성을 포함하는 관계로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차이가 있다(Brammer, 1979; 엄명용·김성천·오혜경·윤혜미, 2001:245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전문적인 관계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며, 때로는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사회복지실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에서 강조되어온 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어서는 안되는 관계, 즉 비전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비전문적인 관계에 대한 사항은 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비전문적 관계를 일컫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이다.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제 2의 관계 즉, 친구, 고용인, 교사, 사업 파트너, 가족구성원 또는 성적 파트너 등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회복지관계(social work relationship)에 들어가기 전, 도중, 종료 후에 시작되는 제 2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Kagle and Giebelhausen, 1994). 많은 원조전문직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를 금지하는 논리는 치료자가 그들의 파워를 잘못 사용하여 그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클라이언트를 조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Zur, 2008).

이중관계에 관한 초기 선행 연구들은 성적 관계에 대한 우려와 해로움을 경고한 것이 많았으며(Davidson, 1977; Pope, Levenson and Schover, 1979),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관계 설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알려져 있는 Kagle과 Giebelhausen(1994)은 성적 관계는 물론 비성적인 이중관계도 비윤리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중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전문적 경계 설정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Gutheil과 Gabbard(1998)는 임상적 실천에서 “경계 문제에 대한 과잉대응(overreaction)(p.410)”에 대해 지적하였다. 경계 이론을 고수하는 것이 결국 전문가를 위험 상황에 몰아넣고, 치료적 상호작용에 경직되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Knapp과 Slattery(2004)는 경계 침범(boundary crossing)과 경계 위반(boundary violation)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Gutheil과 Gabbard(1993)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경계 침범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으며, 중립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로부터 작은 기념일 선물을 받을 때, 혹은 클라이언트를 도울 목적으로 제한된 자기 공개를 할 때 경계의 침범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모두 비성적 관계에 대한 것들이나, 이를 단순히 비신체적 관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계 침범에 대한 논의에는 클라이언트 껴안기(hugging)와 같은 가벼운 신체 접촉도 비윤리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실천 상황에서도 서로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시골마을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중관계를 피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Helbok, Marinelli and Walls, 2006; Michael and Hickman, 2011),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이전 클라이언트가 치료자로 활동하는 경우 그 유익성은 인정되나 사회복지사와의 이중관계는 피할 수 없다(Hecksher, 2007).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제 3차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이 있었던 2001년을 전후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¹⁾들이 이루어졌다.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 연구(이은주, 2000; 최명민, 2005; 김동수, 2006; 이세원, 2008; 주석진, 2010)들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최승희, 2004; 오혜경, 2006), 실천적 갈등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김영란·박미은·서미경, 2001), 조직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엄명용, 2003; 정기원, 2003),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규칙 준수(이종남, 200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김기덕, 2004), 사회복지사 윤리적 민감성 검사 도구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최명민, 2008), 사회복지윤리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연구(최명민, 2009), 사회복지사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행열·김용민, 2011; 최상훈·김정아·권경자, 201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행동 간의 관계(송유미, 2008),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김용석·하지선·이은영·서정민·김종필, 2011) 등 윤리적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성을 판별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윤리적 인식 및 태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사의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연구는 박미은·서미경·김영란(2001), 강선경(2010), 오혜경(2010) 등의 연구가 있다. 박미은 외(2001)의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신념과 경험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실증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의식과 경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선경(2010)의 연구는 이중관계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단계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오혜경(2010)의 연구는 이중관계의 유형, 범위, 윤리적 쟁점에 대한 문헌 검토 및 포커스그룹면접을 통해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관계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이다.

이처럼, 이중관계 윤리의 내용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외국의 연구들과는 달리, 국내의 연구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중관계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정도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연구들에서 감지되는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3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면서, 선택과목의 하나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이 채택되었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중관계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장연진, 2012). 현재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분명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올바른 실천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반면,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고민의 여지를 주고 있기도 하다. 또, 사례관리의 강화, 기관의 실적

1) 국내 연구 동향은 학위논문을 제외한 국내 학술지 논문에 실린 논문 위주로 정리하였다. 학위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이 아닌 석사학위논문 수준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실천현장 및 학계의 연구 경향은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의 추구, 윤리경영 강화 등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만을 들이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이중관계 조항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신념과 경험을 살펴본 박미은 외(2001)의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여, 2011년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을 알아보고,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윤리기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나, 그 문화적 차이로 인해 관계의 양상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의 내용에서도 사회문화적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외국과 동일하게 성적 관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情)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클라이언트의 가계를 단골로 이용하는 것을 비윤리적인 실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 윤리강령에는 분명 사회문화적인 고려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신념과 경험은 2001년과 2011년間に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신념과 경험은 2001년과 2011년간에 차이가 있는가?

2. 문헌 고찰

1) 국내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중관계에 대한 규정은 국내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내에 포함되어 있다. 시대에 따른 전반적인 윤리강령의 변화 내용과 함께 이중관계 규정이 언제 윤리강령에 등장했고,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문직 윤리강령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전문직의 필수요소로,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상담가, 심리치료사 등 원조전문직에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윤리강령은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실제 해당 전문직 종사인력들의 행동지침으로서 적극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2년²⁾ 처음 제정되었지만, 일선 사회복지사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실제 활용된 것은 2001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제 3차 사회복지

2) 1972년 준비가 시작되어 1982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지금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총회에서 통과된 윤리강령은 1988년과 1992년 2차례 개정되었다.

지사 윤리강령(2001년 개정)이라 볼 수 있다. 1992년 개정된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³⁾ 이중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없었으며, 제 3항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와 클라이언트(복지대상자)의 권익 보장, 자기결정권 존중, 차별 금지, 사생활 존중, 비밀보장 등을 명시한 제 4항에서 제 7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였다. 2001년 개정된 윤리강령은 제 2조 7항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와 제 2조 8항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라는 두 개 조항을 통해 이중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Code of Ethics)은 1920년 메리 리치몬드가 경험적인 윤리강령을 초안으로 제시한 것을 최초의 윤리강령으로 볼 수 있으며(Congress, 1999), 이후 1960년 전문가 조직인 미국 사회사업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NASW)가 개발한 윤리강령을 몇 번의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 2008년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사회사업가협회(NASW)의 윤리강령에서 이중관계에 대한 규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3년으로, “현재 진행 중인 클라이언트와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이후 1996년에 “현재의 클라이언트, 혹은 미래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관련이 있는 가족, 친족, 클라이언트의 친구 등과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한다”는 조항과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위험이 있거나 잠재적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나 과거의 클라이언트와 이중, 다중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새로이 첨가되었다(김진숙·장연진, 2012). 이중관계에 대한 내용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 사회복지사 협회(The 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75년에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연차 총회에서 처음 채택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 및 수정되었다.⁴⁾ BASW의 2002년 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제 3조 4항에서 이중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혹은 이전 서비스 이용자, 연구 참여자, 학생, 슈퍼바이저 또는 동료와의 모든 관계에서 갈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적절한 전문적 경계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전문적 관계에 의도치 않은 해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하고, 현재의 서비스 이용자, 학생, 슈퍼바이저, 연구 참여자 등 전문적 관계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권위가 부여되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어떤 유형의 친밀한(intimate) 또는 성적 행위도 맺어서는 안되며, 착취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전 서비스 이용자와 친밀한 혹은 성적 관계를

3) 1992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 유지, ②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 ③ 전문적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영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 ④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음, ⑤ 복지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도움, ⑥ 복지대상자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 계층에 따른 차별 금지, ⑦ 복지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⑧ 동료 간의 존중과 신뢰, ⑨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 절차를 통한 대처, ⑩ 소속기관과 전문단체활동에 적극 참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적 관계 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1985년, 1986년의 연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 1996년 개정, 2002년 개정, 2012년에 개정되었다.

뗏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2012년 개정판⁵⁾의 이중관계와 관련된 원칙은 일반적 원칙 3: 전문적 진실성(professional integrity)에서 “전문적 경계 지키기”이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세워야 하고, 개인적 이익, 경제적 이득 혹은 성적 착취(exploitation)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개정판에는 2002년 판과는 달리 이중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없다. 반면, 영국 사회서비스국(General Social Care Council)에서 제정한 사회복지사(social care workers)를 위한 실천지침(code of practice)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부적절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사회복지사 협회(Japanese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1986년에 윤리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중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없었다. 다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조항에서 사회복지사는 직무수행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문직업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비인간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가장 최근의 것인 2005년 개정판은 의료사회복지사회, 사회복지사회, 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합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협회의 윤리강령이 통합,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도 이중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고, 윤리기준 제 1조 이용자에 대한 윤리 책임, 제 1항에서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와의 전문적 원조 관계를 소중히 해,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또한, 제 2조 3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과의 사이에 윤리상의 딜레마가 생기는 경우, 실천 현장이 본 강령의 원칙을 존중해, 그 기본 정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양한 해석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여러 전문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추후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작업 역시 전문 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을 준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이중관계에 대한 원조전문직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중관계에 대한 원조전문직의 윤리적 신념(인식)과 경험은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들이 속해있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적 신념(belief) 혹은 인식(perception)은 이중관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윤리적이라고 믿고 있는냐를 말하는 것이고, 이중관계에 대한 경험은 해당 행위를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경험했는지를 의미한다.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적 신념(인식)과 경험 정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에는 Holroyd와 Brodsky(1977), Pope, Tabachnick과 Keith-Spiegel(1987), Borys와 Pope(1989), St. Germaine(1996), Ringstad(2008)의 연구와, 국내 연구로 박미은 외(2001), 김진숙·장연진(2012)의 연구가 있다.

5) 2012년 개정판은 총 3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1섹션에 배경(사회사업에서의 윤리, 사회사업의 국제적 정의), 제 2섹션에 가치와 윤리적 원칙, 제 3섹션에 2섹션에 소개된 일반적 윤리 원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실천원칙들이 소개되어 있다. BASW 홈페이지 www.basw.co.uk 참조.

6) JASW 홈페이지 www.jasw.jp 참조.

Holroyd와 Brodsky(1977)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성적 신체 접촉은 금지되어 있으나, 비성적 신체적 접촉은 환자의 개인적 성장을 증진하고, 치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다(Levy, 1973; Pattison, 1973; Holroyd and Brodsky, 1977: 843에서 재인용)”는 것을 전제로, 환자와의 성적(erotic), 비성적(nonerotic) 신체 접촉에 관한 심리학자(psychologists)의 태도에 관해 연구했다. 703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의 치료자들이 껴안기(hugging), 키스(kissing), 애정 어린 접촉(affectionate touching)이 때에 따라 유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4%의 응답자만이 성적 접촉이 유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27%의 치료자들이 이성 환자와 비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답하였고, 7%는 자주 혹은 항상 접촉한다고 답하였다. Borys와 Pope(1989)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psychologists), 심리치료사(psychiatrists),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를 대상으로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신념과 경험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가적 관계(incidental involvements)⁷⁾의 신념 정도는 직업, 클라이언트 인구집단, 이론적 정향, 실천 세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심리학자들이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사에 비해, 주로 여성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대답한 남성 치료자들인 경우, private 실천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중관계에 대해 더 허용적으로 인식하였다.

St. Germaine(1996)는 공인 알코올 및 약물 상담가(Certified Alcohol and Drug Counselor: CADC)를 대상으로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조사했는데, Borys와 Pope(198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신념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CADC가 다른 전문직보다 이중관계 행동들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그것을 윤리적이라고 하는 데에 더 조심스러워했다. 행동 면에서는 대다수의 CADC가 20개 항목 중 19개 항목에 대해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Ringstad(2008)의 결혼/가족 치료자(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MFTs)와 공인 임상사회복지사(Licensed Certified Social Workers: LCSWs) 대상 연구에서는 성별, 실천 세팅, 전문직 연합의 회원 여부가 신념, 경험, 또는 의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남성이 여성보다 이중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허용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경험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단지 한 개 문항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10불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데 대해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실천 세팅과 관련해서는 private 실천가들이 외래 혹은 입원 세팅의 응답자들보다 클라이언트로부터 10불 이하의 선물을 더 많이 받았다. 반면, 외래 세팅에서는 기관 행사에 클라이언트를 초대하거나 상담이 끝난 후 클라이언트와 식사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직 연합의 회원이 아닌 응답자는 회원인 경우보다 이중관계

7) 부가적 관계는 10불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특별한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초대에 응하는 것, 50불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재정적 관계는 치료의 대가로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것, 종결 후에 클라이언트와 친구가 되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물건을 파는 것, 종결 후에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sexual activity)를 맺는 것, 현재의 개인적 스트레스의 세부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노출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기관의 행사에 초대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고용하는 것, 상담 후 클라이언트와 식사하러 가는 것,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나 물품을 사는 것, 개인적 파티나 사회적 행사에 클라이언트를 초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중 전문직 관계는 현재 시점(then-current)의 고용인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 진행중인 클라이언트의 친척, 친구, 연인에게 개별적 치료(individual therapy)를 제공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본인의 클래스에 등록하도록 하거나 하는 것, 현재 학생이나 슈퍼바이저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험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신념 면에서도 덜 엄격하게 인식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이중관계를 성적 관계, 대가성 관계, 개인적 관계로 구분하여 각 관계에 대한 윤리적 신념과 경험 차이를 살펴본 박미은 외(2001)의 연구에서는 여성과 보건세팅의 사회복지사들이 남성이나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이중관계에 대해서 더 민감하였다. 학력에서는 전문대 이하의 학력에서 대가성 관계를 비윤리적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적 관계의 경험 정도도 낮았다. 김진숙·장연진(2012)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기관형태, 업무형태, 직위, 사회복지사 재직 중 윤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 기관의 윤리기준, 주요 서비스 대상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남성 사회복지사가 여성사회복지사에 비해 이중관계에 대해 윤리적인 신념이 더 허용적이었고, 경험도 많았다. 업무형태에서는 주업무가 대인서비스인 경우가 옹호/홍보나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보다 더 이중관계에 민감하였다. 경력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집단이 2년 미만의 신입 사회복지사보다 이중관계 경험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이중관계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중관계 윤리에 대해 더 허용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라 대상은 달랐으나, 대개 직업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원조전문직 간의 윤리의식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 세팅이나 이론적 정향(정신분석적 정향)은 윤리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팅에 따라 서로 다른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의식이나 경험 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사 역시 근무하는 세팅에 따라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변화

변화된 국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업무환경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이중관계 윤리에 대한 신념 및 경험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의 주요 변화는 사례관리 강화, 실적주의 추구, 윤리경영 강조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⁸⁾

첫 번째, 사례관리가 강화된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사례관리는 1990년대 초부터 저서와 논문 등을 통해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본격 도입되었다(권진숙, 2010). 국내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례관리는 그 형태와 방식은 다르나 복지관, 병원, 학교, 시설 등의 다양한 세팅에서, 또 아동, 노인,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공공복지 영역에서도 사례관리가 도입되면서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계에서도 한국사례관리학회가 창설되었으며(2009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공전달체계에서도 사례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삼게 되었다⁹⁾.

8) 이 세 가지 변화 양상은 2011년 설문조사 당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식 응답 내용과 사회복지실천현장 변화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사회복지 실무자들과의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선정하였다.

9)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가 2009년에 개설, 운영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희망복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주선을 책임 맡은 1차 담당자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노력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그들에게 포괄적이고 통합, 조정된 그리고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실천 방법이다(엄명용 외, 2011:377). '복합적'인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사례관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연락빈도가 잦을 수밖에 없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결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개인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식적인 만남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가게를 이용하고 개업식에 참석하는 등의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 많다. 서울사회복지재단(2009)에서 발행한 <사례관리 실천매뉴얼>에 따르면, "종결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특정한 어려움을 가진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아닌 지역주민으로 언제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발생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 금지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비윤리적 실천을 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실적주의 추구¹⁰⁾는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함께 나타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의 2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평가원에서는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지원금의 액수가 조정되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후원 및 자원봉사자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복지조직의 입장에서 평가 결과는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주로 정량적인 평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들이 실적에 민감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기관들이 '실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흔하게 관찰되기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부탁 혹은 강요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기관의 행사 개최 횟수, 참석인원 등이 모두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사회복지기관 평가 지표>¹¹⁾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 실적은 정기 프로그램 등록 실인원과 1회성 프로그램별 등록 실인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회성 프로그램은 바자

지지원단을 출범시켜 전달체계내에 사례관리를 전격 도입하였다.

10) 김영중(2010)은 2000년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변화 중 하나로 관리주의(managerialism)를 꼽았는데, 관리주의는 성과관리 혹은 수행성과 관리 등의 방식으로 실행되고, 성과관리는 조직 간 관계를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계약을 통해 결과적 성과를 위주로 통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에서 개발한 <2012년 사회복지기관 평가지표> 참조.

회, 노인잔치, 지역축제, 무료영화상영, 불특정 다수 대상 강연 및 교육 등의 행사성 사업을 말한다.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경우는 명단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기획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행사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름을 남기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에게 후원금이나 기금 모금 능력이 강조되면서, 일부 소규모 사회복지조직에서 기관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스폰서나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에 대구 OO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에게 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학대를 가해 지역신문에 기사화되고 포탈 사이트에서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사건도 있었다.¹²⁾

세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 강조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와 투명성 확립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윤리경영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위원단 운영, 사회복지윤리경영 교육 및 실천매뉴얼 제작, 사회복지윤리경영전문가 양성 및 보수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 중점사업 중 하나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회복지 윤리경영 선도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윤리경영 실천계획서 작성, 양성교육 인원을 통한 내부 교육 실시, 기관별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제정, 기관별 윤리경영 자율과업 실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비록 4개년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기는 하나, 사회복지계 전반에 윤리적 인식 개선과 윤리적 민감성 증진에는 많은 기여를 한 사업이었고, 양옥경·최명민(2010)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 자가점검지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기관별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제정함으로써, 기관 내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 6조에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이러한 상황을 문의하거나 윤리적 권고를 받기보다는, 나름의 윤리기준을 세워 클라이언트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오혜경, 2010), 기관별 윤리강령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고, 사업 당시 개설되었던 사회복지 윤리경영 정보센터(www.ethicswelfare.net)도 폐쇄되어, 당시의 자료를 계속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 팔공신문 2008년 8월 12일자 기사 참조

http://palgong.co.kr/index.php?channel=article_view&cate=100102100&no=15132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2001년 조사 연구되어 본 학회지에 발표된 박미은, 서미경, 김영란의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경험에 관한 연구” 논문 상의 자료이다.¹³⁾ 또다른 시점의 자료는 박미은 외 2인의 발표논문에서 알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본 연구진이 직접 조사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목록을 토대로 체계적 표집방법으로 표집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현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 보수교육 참석자, 그리고 임의로 표집된 병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실시되었고, 이중 379부가 회수되었다. 이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센터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된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박미은 외(2001)의 연구와 비교 가능하도록 비교대상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기관, 복지관,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응답자 사례 256부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시점의 독립된 연구의 조사치가 본 연구의 자료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박미은 외(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중관계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이중관계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원조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척도는 Borys와 Pope(1989)의 연구 내용과 Corey, Corey와 Callahan(1993)의 이중관계에 대한 self-inventory를 참조하여 구성한 것으로, 예비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이중관계를 성적 관계, 대가성 관계, 개인적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각 문항은 실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로서 각 상황에 대해 얼마나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신념), 또 각 상황을 얼마나 경험하였는지(경험)를 파악하는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념의 경우,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1점)에서 매우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5점)까지 측정되고, 경험은 전혀 경험이 없다(1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와 경험이 있다(5점)까지 측정된다. 2011년 조사에서는 이들이 사용한 척도 중 개인적 관계에 SNS 활용 등의 질문이 더 추가되었지만,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추가된 문항은 제외하고, 2001년 연구에서 제시된 문항만을 비교, 제시하였다. 이번 조

13) 2001년 연구의 주저자인 박미은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연구결과 비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는 2001년 학술지에 발표된 수치만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에 동의해주신 저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사에서 나타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문항의 신뢰도

척도	신뢰도
성적 관계	.878
대가성 관계	.776
개인적 관계	.846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1년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h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고,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 또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윤리적 신념과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Pearson Correlation 계수를 활용하여 신념과 경험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 변수별 집단에 따른 윤리적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는 Tamhane T2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가 아닌, 각기 다른 연구자에 의해 별개로 이루어진 2001년도 자료와 2011년의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두 자료의 결과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2001년의 원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문에 제시된 결과치를 활용하여 T검증 공식에 직접 대입, 계산하여 비교하였다¹⁴⁾. 마지막으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값을 구해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두 시점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1년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남자가 34.9%, 여자가 65.1%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전문대졸이 3.5%, 대졸이 64.5%, 대학원졸이 31.6%로 나타났으며, 종교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54.1%, 종교없음이 20.8%, 천주교가 17.3% 순으

14) 박미은 외(2001)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를 직접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검정통계량 t값 계산 공식은 유태균(2006)에 소개된 아래와 같은 공식이다.

$$Sp^2 = \frac{(n_1 - 1)S_1^2 + (n_2 - 1)S_2^2}{n_1 + n_2 - 2} \quad , \quad t = \frac{(\bar{X}_1 - \bar{X}_2) - (\mu_1 - \mu_2)}{S_p \sqrt{1/n_1 + 1/n_2}}$$

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51.4%, 기혼이 47.8%였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은 복지관이 66%로 가장 많았고, 보건기관이 29.7%였다. 업무형태는 대인서비스가 56.3%로 가장 많았고, 행정/관리가 33.7%로 나타났다. 연령은 20-3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평균연령은 약 33세였다. 이들의 사회복지사 경력은 5년 초과 10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평균 경력은 약 6년이었다. 2011년의 조사대상자는 2001년 조사대상자보다 남자 사회복지사의 비율, 대졸자의 비율, 기독교의 비율, 기혼자의 비율, 복지관 종사자의 비율이 좀 더 많았지만, 전반적인 분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	내용	N(%)	
		2001년	2011년
성별	남	84(28.5)	89(34.9)
	여	211(71.5)	166(65.1)
학력	전문대졸(학점은행제 포함)	13(4.4)	9(3.5)
	대졸(학점은행제 포함)	168(56.9)	166(64.8)
	대학원졸	114(38.6)	81(31.6)
종교	기독교	131(44.4)	138(54.1)
	천주교	57(19.3)	44(17.3)
	불교	19(6.4)	18(7.1)
	종교 없음	81(27.5)	53(20.8)
	기타	7(2.4)	2(0.8)
결혼 상태	기혼	118(40.0)	122(47.8)
	미혼	175(59.3)	131(51.4)
	이혼	1(0.3)	1(0.4)
	기타	1 (0.3)	1(0.3)
근무기관 형태	복지관	132(44.7)	169(66.0)
	보건기관	115(39.0)	76(29.7)
	시민단체	47(15.9)	11(4.3)
업무 형태	행정/관리	70(23.7)	85(33.7)
	옹호/홍보	16(5.4)	13(5.2)
	대인서비스	191(64.7)	142(56.3)
	기타	17(5.8)	12(4.8)
연령	20대 이하		146(38.5)
	30대		151(39.8)
	40대	-	65(17.2)
	50대		13(3.4)
	60대 이상		4(1.1)
	32.93±7.156	30.3299±6.0054	32.93±7.156
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하		103(27.2)
	2년 초과- 5년 이하		109(28.8)
	5년 초과-10년 이하	-	119(31.3)
	10년 초과		48(12.7)
		52.4021±80.4989	72.91±54.310
총 사례수		295	256

2)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

2011년 조사에서,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은 <표 3>과 같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적 관계, 대가성 관계에 대한 신념은 동일한 유형의 이중관계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이한 유형의 이중관계 신념과 경험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은 성적 관계의 경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념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되며, 특정 유형의 이중관계에 대한 교육이 이중관계 전반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이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성적 관계 경험이 더 적거나 많은 것이 아니며, 또한, 성적 관계 경험이 더 적거나 많다고 해서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이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관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비윤리적이라는 전문적 함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윤리적/비윤리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윤리성이 함의된 성적관계의 행위에 대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 간의 상관관계

		신념		
		성적 관계	대가성 관계	개인적 관계
경험	성적 관계	.153*	.230**	.103
	대가성 관계	.138*	.442**	.280**
	개인적 관계	.137*	.406**	.389**

* p<.05, ** p<.01, *** p<.001

또한 응답자들의 성적, 대가성,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¹⁵⁾, 성적, 대가성, 개인적 관계 모두에서 신념과 경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에 대한 평균점수가 경험에 대한 평균점수보다 높아 신념은 허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실제 이중관계의 경험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표 4>). 이는 신념은 허용적일지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단일표본 t검정이란 모집단의 분산을 알지 못할 때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평균과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이나 경험적 배경에 의하여 설정한 특정한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성태제, 2007:126).

<표 4>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

이중관계		2011년			
		평균	표준편차	t값	p
성적 관계	신념	1.4217	.5478	12.120	.000***
	경험	1.0040	.0332		
대가성 관계	신념	2.0935	.7516	15.373	.000***
	경험	1.4201	.4652		
개인적 관계	신념	2.5802	.7626	26.726	.000***
	경험	1.3920	.4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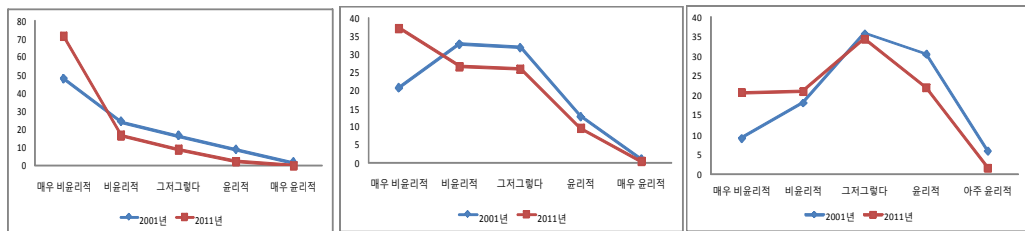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의 변화

<표 5> 이중관계 신념 항목별 설문 응답분포

유형	항목	(%)					
		매우 비 윤리적	비 윤리적	그저 그렇다	윤리적	매우 윤리적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성적	현재 진행 중인 이성 클라이언트와 데이트할 수 있다.	58.8	28.2	10.6	2.4	-	1.56(0.775)
	현재 진행 중인 이성 클라이언트와 키스할 수 있다.	89.4	9.8	0.8	-	-	1.11(0.342)
	현재 진행 중인 이성 클라이언트와 성관계할 수 있다.	91.4	7.8	0.8	-	-	1.09(0.318)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 데이트할 수 있다.	49.6	23.6	20.1	5.9	0.8	1.85(0.992)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 키스할 수 있다.	68.2	17.3	11.8	2.7	-	1.49(0.808)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 성관계 할 수 있다.	72.4	14.6	10.2	2.8	-	1.43(0.786)
평균(표준편차)		1.4217 (.5478)					
대가성	도와준 대가로 클라이언트의 직업상 서비스(세차나 미용 등)를 받을 수 있다.	47.5	33.7	17.3	1.6	-	1.73(0.799)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7.1	17.5	40.2	24.3	0.8	2.74(1.036)
	기관의 행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스폰서나 기부금을 요구할 수 있다.	47.2	28.7	20.5	3.1	0.4	1.81(0.897)
	평균(표준편차)	2.0935 (.7516)					
개인적	클라이언트가 개인적 행사에 초대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13.55	13	41.5	27.45	4.5	2.88(1.056)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행사에 클라이언트를 초대할 수 있다.	28.6	32.05	28.45	10.1	0.8	2.13(1.088)
	현재 진행 중인 클라이언트와 사적인 만남(식사나 영화관람 등)을 가질 수 있다.	38.0	34.5	21.2	6.3	-	1.96(1.008)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 사적인 만남(식사나 영화 관련 등)을 가질 수 있다.	32.5	27.8	25.1	14.5	-	2.22(1.056)
	클라이언트에게 개인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다.	12.2	16.1	42.4	27.5	2.0	2.91(0.998)
	클라이언트가 운영하는 상점을 단골로 이용한다.	11.4	14.5	47.1	25.9	1.2	2.91(0.949)
	친척이 클라이언트라도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다.	9.4	9.8	35.4	42.5	2.8	3.19(0.989)
평균(표준편차)		2.5987 (.7568)					

2011년의 이중관계 신념에 대한 각 문항의 응답분포는 <표 5>와 같다. 응답자들은 성적 관계에 있어 데이트보다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 과거 클라이언트보다는 현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해 더 엄격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성 관계에 있어서는 기관행사 참여에 대해 다른 문항에 비해 더 허용적이었다. 10년 전보다는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허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많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 참여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 관계에서는 클라이언트 개인행사의 초대보다 사회복지사 개인행사 초대에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 연락처를 알려준다거나 클라이언트의 상점 이용하기, 친척에게 도움주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허용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응답자간 표준편차도 다른 문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사회복지사의 신념이 1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하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은 <표 5>의 각 관계유형에 대한 소계 점수와 2001년의 소계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 관계에 대한 신념은 2개 시점의 선의 모양은 유사하나 2011년의 신념의 기울기가 더 급경사를 나타내 엄격한 판단에 응답이 몰려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성적 관계에 대한 신념 변화추이 <그림 2> 대가성 관계에 대한 신념 변화추이 <그림 3>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 변화추이

대가성 관계에 대한 신념의 변화추이는 2001년 시점에서는 산 모양이었던 분포가 2011년에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모양의 분포로 바뀌었으며 더 엄격한 판단에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성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대가성 관계에 대한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더 엄격해지긴 했지만, ‘그저그렇다’ 라는 답변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와준 대가로 클라이언트의 직업상 서비스(세차나 미용 등)를 받을 수 있다’, ‘기관의 행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스폰서나 기부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는 답변이 과거에는 23.7%, 32.2% 정도였으나, 현재에는 약 4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분포를 보였다.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의 변화추이는 두 시점 모두 산 모양의 분포를 보였지만, 2011년에 좀 더 엄격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그렇다’라는 답변이 많은 산 모양의 분포는 윤리적/비윤리적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10년간의 변화 추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관계의 각 관계 유형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성적 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S_p^2 = \frac{(n_1 - 1)S_1^2 + (n_2 - 1)S_2^2}{n_1 + n_2 - 2} = \frac{(295 - 1)0.6886 + (256 - 1)0.3001}{295 + 256 - 2} = 0.5081$$

$$t = \frac{(\bar{X}_1 - \bar{X}_2) - (\mu_1 - \mu_2)}{S_p \sqrt{1/n_1 + 1/n_2}} = \frac{(1.9047 - 1.4217) - 0}{0.7128 \sqrt{1/295 + 1/256}} = 7.9326$$

대가성 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S_p^2 = \frac{(n_1 - 1)S_1^2 + (n_2 - 1)S_2^2}{n_1 + n_2 - 2} = \frac{(295 - 1)0.4917 + (256 - 1)0.5649}{295 + 256 - 2} = 0.5257$$

$$t = \frac{(\bar{X}_1 - \bar{X}_2) - (\mu_1 - \mu_2)}{S_p \sqrt{1/n_1 + 1/n_2}} = \frac{(2.3940 - 2.0935) - 0}{0.7250 \sqrt{1/295 + 1/256}} = 4.8522$$

개인적 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S_p^2 = \frac{(n_1 - 1)S_1^2 + (n_2 - 1)S_2^2}{n_1 + n_2 - 2} = \frac{(295 - 1)0.4761 + (256 - 1)0.5816}{295 + 256 - 2} = 0.5251$$

$$t = \frac{(\bar{X}_1 - \bar{X}_2) - (\mu_1 - \mu_2)}{S_p \sqrt{1/n_1 + 1/n_2}} = \frac{(3.0565 - 2.5802) - 0}{0.7246 \sqrt{1/295 + 1/256}} = 7.6952$$

이상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이중관계의 모든 유형에서 2001년의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2011년의 사회복지사들의 신념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년 전에 비해 현재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엄격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10년간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의 차이

이중관계		평균	표준편차	t-값	임계값
성적 관계	2001	1.9047	.8298	7.9326	>3.091***
	2011	1.4217	.5478		
대가성 관계	2001	2.3940	.7012	4.8522	
	2011	2.0935	.7516		
개인적 관계	2001	3.0565	.6900	7.6952	
	2011	2.5802	.7626		

* p<.05, ** p<.01, *** p<.001, T분포의 .001 수준의 임계치는 3.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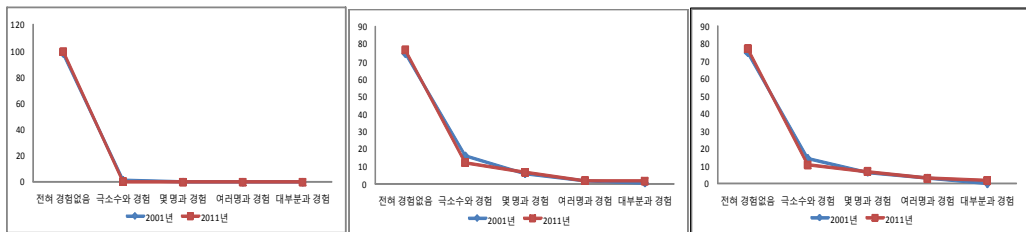
4) 이중관계에 대한 경험의 변화

〈표 7〉 이중관계 경험 항목별 설문 응답분포

유형	항목	전혀 경험이 없다	극소수 와 경험	몇 명과 경험	여러 명과 경험	대부분 과 경험	(%)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성 적	현재 진행 중인 이성 클라이언트와 데이트하기	99.6	0.4	-	-	-	1.00(0.630)
	현재 진행 중인 이성 클라이언트와의 키스	99.6	0.4	-	-	-	1.00(0.000)
	현재 진행 중인 이성 클라이언트와의 성관계	100	-	-	-	-	1.00(0.154)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 데이트하기	98.8	0.8	0.4	-	-	1.02(0.000)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의 키스	100	-	-	-	-	1.00(0.000)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의 성관계	100	-	-	-	-	1.00(0.000)
평균(표준편차)		1.0040(.0332)					
대 가 성	도와준 대가로 클라이언트의 직업상 서비스(세차나 미용 등)를 받음	94.0	4.8	0.8	0.4	-	1.08(0.332)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기	46.0	21.6	18.4	8.4	5.6	2.06(1.219)
	기관의 행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스폰서나 기부금을 요청하기	92.0	6.0	1.6	0.4	-	1.10(0.386)
	평균(표준편차)	1.4201(.4652)					
개 인 적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행사에 초대받고 참석하기	77.6	13.4	5.5	2.55	0.95	1.33(0.742)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행사에 클라이언트를 초대하기	91.8	5.65	2	0.4	0.15	1.10(0.382)
	현재 진행 중인 클라이언트와 사적으로 만나기(식사나 영화관람 등)	89.2	8.8	1.2	0.4	0.4	1.14(0.465)
	종결된 과거 클라이언트와 사적으로 만나기(식사나 영화 관련 등)	88.8	8.4	2.0	0.4	0.4	1.15(0.491)
	클라이언트에게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기	32.1	25.3	23.3	8.0	11.2	2.41(1.314)
	클라이언트가 운영하는 상점을 단골로 이용하기	74.1	14.7	9.2	2.0	-	1.39(0.737)
	친척이 클라이언트라도 전문적인 도움주기	81.7	12.0	5.2	0.8	0.4	1.26(0.628)
평균(표준편차)		1.3920(.4185)					

2011년의 이중관계 경험에 대한 각 문항의 응답분포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성적 관계에 있어 실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인 접촉 경험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성적 관계는 10년이나 현재나 성적 관계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가성 관계에 있어서는 ‘기관행사 참여요청’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경험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던 종결되었던 ‘클라이언트와 사적인 만남’과 ‘개인연락처 알려주기’ ‘클라이언트가 운영하는 상점 이용’ 등은 10년 전보다 더 경험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문항은 응답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 응답자마다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가성 관계와 개인적 관계에 대한 부분은 윤리강령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사 개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오혜경(2010)의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적 기준"에 따라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사회복지사들의 이중관계 경험이 10년 전과 현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신념에 대한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표 7>의 각 관계 유형에 대한 소계 점수와 2001년의 소계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의 관계에서 그래프의 모양과 기울기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¹⁶⁾.



<그림 4> 성적관계 경험에 대한 변화추이 <그림 5> 대가성 관계 경험에 대한 변화 추이 <그림 6> 개인적 관계 경험에 대한 변화 추이

5)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이중관계의 신념과 경험 차이의 변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범주로 나뉘는 변수에 대해서는 t검정을, 세 범주 이상으로 나뉘는 변수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8>, <표 9>). 2011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기관형태, 업무형태, 자격 급수, 재직 중 윤리교육 유무, 기관내 윤리기준 유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는 2001년의 연구에서 제시된 성별, 교육수준, 기관형태의 세 변수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중 성별과 기관형태 등의 변수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이중관계의 신념과 경험의 차이는 성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엄격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관계 유형에 대한 신념과 개인적 관계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차이가 있는 항목이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소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학교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윤리에 대해 강조하면서 남녀 간 생각은 다르더라도 경험에서는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16) 실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의 비교만으로도 2001년과 2011년의 경험율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T검증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성적 관계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남녀 간 신념 차이는 ‘관계 맺기’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이 관계에 대해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남성 사회복지사보다 더 민감하고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치료자가 여성 치료자보다 성적 이중관계는 물론이고 비성적 이중관계에 대해서도 더 허용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Borys와 Pope(1989)의 연구나 Ringstad(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표 8> 성별에 따른 이중관계 신념과 경험의 차이

	이중 관계	세부 항목	2001년				2011년			
			평균	표준편차	t값	p	평균	표준편차	t값	p
신 념	성적 관계	남	2.0569	.8832	1.969	.050**	1.5693	.6497	2.930	.004**
		여	1.8542	.8024			1.3405	.4697		
	대가성 관계	남	2.2276	.7198	-2.540	.012**	2.0974	.7216	.001	.999
		여	2.4521	.6836			2.0973	.7652		
	개인적 관계	남	3.2998	.7507	3.724	.000***	2.7922	.7739	3.130	.002**
		여	2.9699	.6461			2.4869	.7183		
경 험	성적 관계	남	1.0417	.1845	1.705	.089	1.0019	.0177	-.739	.460
		여	1.0158	.0763			1.0051	.0390		
	대가성 관계	남	1.4603	.5449	1.228	.220	1.4432	.4918	.773	.440
		여	1.3778	.5105			1.3954	.4506		
	개인적 관계	남	1.5456	.5127	4.515	.000**	1.4448	.4014	.773	.129
		여	1.3014	.3732			1.3607	.4244		

* p<.05, ** p<.01, *** p<.001

교육수준, 기관 형태에 따른 윤리적 신념 및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고,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Tamhane T2를,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에는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 검정하였다¹⁷⁾. 먼저, 교육수준에 따른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1년이나 2011년이나 모두 교육수준에 따라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에 차이가 있으나, 차이의 양상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9>). 2001년 연구에서는 대가성 관계의 신념 평균이 전문대졸이 가장 낮고(즉,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짐), 대졸과 대학원졸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선행연구결과와 다르다고 하면서, 전문대졸의 비율이 4.4% 밖에 되지 않아 교육정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17)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 사후 검정으로 집단 간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가정한 Tamhane T2, Dunnett T3, Games-Howll 등의 방법으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강병서·김계수, 2009:209).

반면, 2011년에는 전문대졸의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이 대졸, 그다음이 대학원졸 순으로 대학원졸이 가장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관계 유형도 2001년과 2011년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2001년에는 교육수준에 따라 대가성 관계에 대한 신념과 개인적 관계의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성적 관계 경험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2011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전문대졸 이하에서 대졸이나 대학원졸 응답자보다 성적 관계의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졸 이하의 사회복지사들이 정규학위과정에서 윤리에 대한 교육기회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표 9> 교육수준에 따른 이중관계 신념과 경험의 차이

	이중 관계	세부 항목	2001년				2011년			
			평균	표준편차	t값	p	평균	표준편차	t값	p
신 념	성적 관계	전문대졸	1.0877	.8075	.222	.801	1.6875	.7686	1.183	.308
		대졸	1.9303	.8526			1.4299	.5489		
		대학원졸	1.8787	.8038			1.3807	.5245		
	대가성 관계	전문대졸	1.9231	.5120	3.103	.046*	2.2857	1.3253	1.926	.148
		대졸	2.4157	.7073			2.1534	.7474		
		대학원졸	2.4130	.6948			1.9671	.6741		
개인적 관계	전문대졸	2.8571	.5948	1.112	.330	2.3393	.8804	2.855	.059	
	대졸	3.1069	.7005			2.6768	.7294			
	대학원졸	3.0213	.6879			2.4568	.7627			
경 험	성적 관계	전문대졸	1.0256	.0924	1.133	.323	1.0370	.1111	5.234	.006**
		대졸	1.0317	.1470			1.0041	.0318		
		대학원졸	1.0102	.0555			1.0000	0.0000		
	대가성 관계	전문대졸	1.2564	.3886	.532	.588	1.3333	.4714	1.994	.138
		대졸	1.4112	.5524			1.4560	.4713		
		대학원졸	1.4035	.4867			1.3333	.4433		
개인적 관계	전문대졸	1.1978	.1981	6.774	.001**	1.2321	.3142	.641	.528	
	대졸	1.3088	.3451			1.4012	.4079			
	대학원졸	1.4817	.5308			1.3834	.4438			

* p<.05, ** p<.01, *** p<.001

근무기관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01년이나 2011년이나 모두 근무기관 형태에 따라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그러나 2001년에는 근무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성적 관계,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던 것이 2011년에는 대가성 관계,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근무기관이 보건세팅인 경우에 다른 기관 종사자보다 더 엄격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경험도 더 적었다. 이는 성적 관계처럼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무기관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으나, 비성적 관계인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판단이 좌우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세팅이라는 현장의 특징과 이 세팅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모델적 정향이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평균적으로 석사학위소지자의 비율이 높고 수련기간 등 전문적 훈련이 긴 의료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훈련의 기회가 더 많고 실천에 있어 관계를 많이 활용하는 실천모델의 정향을 갖고 있어 더 엄격한 기준과 경험치를 갖게 된 것이다. 반면에,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현장에서는 책무성의 강조와 함께 기금조성을 위한 실적주의와 사례관리 실천이 대가성 관계나 개인적 관계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윤리강령에서 성적 관계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이나 경험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표 10〉 근무기관에 따른 이중관계 신념과 경험의 차이

	이중 관계	세부 항목	2001년				2011년			
			평균	표준편차	t값	p	평균	표준편차	t값	p
신 념	성적 관계	복지관	2.0116	.8812	4.847	.009**	1.4395	.5628	.282	.754
		보건세팅	1.1759	.6641						
		시민단체	2.0426	.9577						
	대가성 관계	복지관	2.3179	.6780	1.436	.240	2.1606	.7473	4.376	.014**
		보건세팅	2.4444	.6808						
		시민단체	2.4823	.8010						
개인적 관계	복지관	3.2444	.6449	11.129	.000***	2.7338	.7067	9.447	.000***	
	보건세팅	2.8396	.6310							
	시민단체	3.0851	.8030							
경 험	성적 관계	복지관	1.0379	.1616	2.290	.103	1.0040	.0314	.072	.931
		보건세팅	1.0058	.0377						
		시민단체	1.0248	.0981						
	대가성 관계	복지관	1.4580	.5170	2.219	.111	1.4960	.4837	10.206	.000***
		보건세팅	1.3507	.5332						
		시민단체	1.3759	.4994						
개인적 관계	복지관	1.4220	.4671	1.375	.255	1.4450	.4638	4.568	.011*	
	보건세팅	1.3507	.4002							
	시민단체	1.3759	.3881							

* p<.05, ** p<.01, *** p<.001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경험이 지난 10년 간 변화가 있었는지를 2001년과 2011년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비교해보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사들은 성적 관계에 있어 테이트보다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 과거 클라이언트보다는 현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해 더 엄격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성 관계에서는 사회복지사 개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기관행사 참여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다. 개인적 관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초대보다 사회복지사의 초

대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었고, 개인연락처를 알려준다거나 클라이언트의 상점 이용하기, 친척에게 도움주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허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은 모든 유형에서 2001년과 2011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의 사회복지사들이 과거의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엄격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가성 관계에 대한 신념은 2001년에는 '그저그렇다'라는 응답이 많은 산 모양이었던 분포가 2011년에는 엄격한 판단이 많은 기울기가 감소하는 모양의 분포로 바뀌었다. 성적 관계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은 그래프상의 분포는 비슷한 모양을 띠었지만, 2011년에 좀 더 엄격한 응답이 많았다. 이중관계에 대한 경험 중 성적 관계의 실제 경험은 매우 적었고, 특히 신체적인 접촉 경험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가성 관계에서 '기관행사 참여'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경험이 더 많아졌으며, 개인적 관계에서도 개인연락처 알려주기, 클라이언트가 운영하는 상점 이용하기 등도 10년 전보다 더 경험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성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엄격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2001년에는 모든 관계유형에 대한 신념과 개인적 관계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차이가 있는 항목이 감소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2001년에는 대가성 관계에 대한 신념과 개인적 관계의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성적관계 경험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근무기관 형태는 2001년 2011년 모두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적 관계,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던 것(2001년)이 2011년에는 대가성 관계,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근무기관이 보건세팅인 경우에 다른 기관 종사자보다 더 엄격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경험도 더 적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10년 전에 비해 신념은 더 엄격해졌고 경험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념이 경험에 영향을 준 것인지, 경험이 신념에 영향을 준 것인지 더 모호해졌다. 따라서 윤리 교육은 신념에 영향을 주도록, 윤리경영은 경험에 영향을 주도록 쌍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으로는 윤리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신념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윤리경영을 통해 최고관리자의 의지를 다지고 기관의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기관의 윤리경영 강조는 무엇보다도 기관의 최고관리자의 윤리 경영 의지가 중요하며 (국가청렴위원회, 2007), 이를 통해 소속 직원에게 그 파급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윤리경영 선도기관 사업의 효과를 되살리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의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성적 관계는 신념과 경험 모두 엄격해지고 경험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경험이 수렴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이 다수 개설되고, 현재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그간 사회복지사들의 행위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성적 관계를 넘어서 다른 관계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확대·수정된다면 윤리강령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

다.

셋째, 대가성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기관행사 참여요청'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관의 실적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사회복지사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기관 차원의 것이고, 그 이득이 현물이나 현금 등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에서 다소 허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 관계인가, 아닌가' 보다는 '공적인 것인가, 사적인 것인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정될 윤리강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가능하다는 식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인적 관계에 대한 신념이 '그저그렇다'라는 답변이 많은 산 모양의 분포가 나타난 것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비윤리적 판단이 애매모호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례별 접근과 함께 추후 '윤리기준'의 토대가 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프상의 경향은 비슷하지만, 평균점수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사례관리 방법의 확산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복합적인'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자주 연락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기 때문에 종결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례관리 실천에서 이중관계와 관련된 세부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양상의 변화에 따른 이중관계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10년 전과 현재의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시행으로 인해 2001년에는 1급 52,593명, 2급 13,292명, 3급 9,273명에 불과하던 사회복지사의 수가 2010년에는 1급 412,815명, 2급 309,612명, 3급 12,215명으로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은 대학에서 여전히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격년으로 개설되는 등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형태가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필수영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짧은 교육시간으로 인해 그 내용과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강령의 개정, 사회복지 윤리교육 및 훈련의 강화, 워크숍 형태의 윤리의식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경험'치를 측정하였으나, 실제로 생각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험'이 신념을 행위로 옮긴 것일 수도 있지만, 신념과 관계없이 경험할 기회가 많아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위, 경력 등에 따른 경험 차이는 응답자의 신념보다는 해당 상황에 부딪힐 기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에 따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력이 많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퍼바이

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나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더욱 윤리적 민감성이 높여, 본인 뿐 아니라 지도감독 대상들이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척도의 한계이다. 2001년도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비표준화되어 있고,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범주를 구분하는 등 일반화된 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비교 대상 연구가 이중관계에 대한 국내의 유일한 실증연구였고, 윤리의식과 경험에 대한 사회복지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 등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척도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과 경험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패널자료들이 축적되고 연구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병서·김계수. 2009. 『SPSS 17.0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강선경. 2010.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 12: 31-49.
- 국가청렴위원회. 2007. 『기업 윤리경영 모델』.
- 권진숙. 2010. “한국 사례관리실천의 혼돈과 대안”. 『사례관리연구』 1(1): 1-22.
- 김기덕. 2004.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분석”. 『비판사회정책』 17: 13-46.
- 김동수. 2006. “교회사회사업의 거시적 실천을 위한 윤리와 가치”. 『교회사회사업』 4: 89-115.
- 김영란·박미은·서미경. 2001. “실천적 갈등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7(봄): 1-28.
- 김영중. 2010.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 김용석·하지선·이은영·서정민·김종필. 2011.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Professional Opinion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사회복지 실천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3): 157-185.
- 김진숙·장연진. 2012.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에 관한 연구-이중관계(dual relationship)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2): 235-266.
- 김행열·김용민. 2011. “한국 사회복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58: 209-232.
- 박미은·서미경·김영란. 2001.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11): 178-205.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 서울시복지재단. 2009.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지역사회보호사업-사례관리 실천 매뉴얼-』.
- 성태제. 2007. 『알기 쉬운 통계분석-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송유미. 2008.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행동 간의 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적 함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 195-210.
- 양옥경·최명민. 2010. “사회복지기관 윤리경영 자가점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2): 55-95.

- 엄명용. 2003. "사회복지기관의 '숨은 규칙' 확인 및 그 영향력 측정을 통한 사회복지실천 내실화 방안". 『한국사회복지학』 52: 171-200.
- 엄명용·김성천·오혜경·윤혜미. 2011. 『사회복지실천의 이해(3판)』. 서울: 학지사.
- 오혜경. 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연구』 11: 220-235.
- 오혜경. 2010.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이중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중심-". 『사회과학연구』 26(4): 199-222.
- 유태균. 2006.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기초원리』. 고양: 공동체.
- 이세원.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53-76.
- 이은주. 2000. "가족치료의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1): 59-85.
- 이종남. 2004.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규칙 준수 사이의 윤리적 갈등·충실성의 상충". 『임상사회사업연구』 1(2):167-186.
- 정기원. 2003.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윤리적 의사 결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 189-211.
- 주석진. 2010. "학교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2): 45-70.
- 최명민. 2005.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182-215.
- 최명민. 2008. "사회복지사 윤리적 민감성 검사도구(SWEST)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2): 5-28.
- 최명민. 2009. "사회복지윤리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연구-윤리적 민감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4): 381-402.
- 최상훈·김정아·권경자. 2011.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윤리풍토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55-82.
- 최승희. 2004.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8: 77-93.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사회복지 윤리경영 선도기관 육성사업 3차년도 결과보고서』.
- Borys, D. S., and K. S. Pope. 1989. "Dual Relationships Between Therapist and Clients: A National Study of Psychologists, Psychiatrists, and Social Worke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5): 283-293.
- Brammer, L. M. 1979. *The helping Relationship: Process and Skill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ngress, E. P. 1999.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Identifying and Resolving Professional Dilemma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Corey, G., M. A. Corey, and P. Callahan. 1993.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Davidson, V. 1977. "Psychiatry's Problem with No Name: Therapist-Patient Sex."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37: 43-50.
- Gutheil, T. G., and G. O. Gabbard. 1993. "The Concept of Boundaries in Clinical Practice: Theoretical and Risk-management Dimension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2): 188-196.
- Gutheil, T. G., and G. O. Gabbard. 1998. "Misuses and Misunderstandings of Boundary Theory in Clinical and Regulatory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3): 409-414.

- Hecksher, D. 2007. "Former Substance Users Working as Counselors, A Dual Relationship." *Substance Use & Misuse* 42(8): 1253-1268.
- Helbok, C. M., R. P. Marinelli, and R. T. Walls. 2006. "National survey of ethical practices across rural and urban communiti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7(1): 36-44.
- Holroyd, J. C., and A. M. Brodsky. 1977. "Psychologists'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Erotic and Nonerotic Physical Contact with Patients." *American Psychiatrist* 32(10): 843-849.
- Kagle, J. D., and P. N. Giebelhausen. 1994. "Dual Relationships and Professional Boundaries." *Social Work* 39(2): 213-220.
- Knapp, S., and J. M. Slattery. 2004. "Professional Boundaries in Nontraditional Setting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5(5): 553-558.
- Levy, R. B. 1973. *I can only touch you now*.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Michael, D. R., and S. Hickman. 2011. "Dual Relations and Beyond: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Ethical Challenges for Rural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Work Values & Ethics* 8(1): 29-43
- Pattison, J. E. 1973. "Effects of Touch on Self-exploration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70-175.
- Pope, K. S., B. G. Tabachnick, and P. K. Keith-Spiegel. 1987. "Ethics of Practice: The Beliefs and Behaviors of Psychologists as Therapists." *American Psychiatrists* 42(11): 993-1006.
- Ringstad, R. 2008. "The Ethics of Dual Relationships: Beliefs and Behaviors of Clinical Practitioners." *Families in Society* 89(1): 69-77.
- Rossi, P. H., and H. E. Freeman. 1985. *Evaluation :a systematic approach(3rd ed.)*. Beverly Hills :Sage.
- St. Germaine, J. 1996. "Dual Relationships and Certified Alcohol and Drug Counselors: A National Study of Ethical Beliefs and Behaviors."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14(2): 29-45.
- Zur, O. 2008. "Beyond the office walls: Home visits, Celebarions, Adventure Therapy, Incidental Encounters and other Encounters outside the Office Walls." <http://www.zurinstitute.com/outofficeexperiences.html>.

Changes in Social Workers' Belief and Behaviors towards Dual Relationship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2001 and 2011-

Jang, Yeon-Jin

(Hanyang Cyber University)

Kim, Jin-Sook

(Hanyang Cyber University)

Koo, Hye-Young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study how social workers' belief and behaviors with respect to ethical issues have changed during the past decade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tudies carried out in 2001 and 2011, respectively. Focusing on dual relationship with clients, this article reviewed how social workers' belief and behaviors towards ethical issues have changed over the chang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varying properties of the organizations for which the workers provide servic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surveyed 356 social workers while the results of the survey was subjected to a comparative review with another research performed 10 years ago under a similar approach.

Widely acknowledged during the survey was that the social workers appeared to have more rigid ethical standards compared to 10 years ago; however, they tended to be more permissive in certain issues such as bartering relationship and private relationship.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urvey, belief and behaviors of social workers towards ethical issues varied depending upon their gender, education level, and the properties of the organization as seen in the survey in 2001 while the modalities have changed over the decad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iculum of social work ethic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present field situation and inspire ethical sensitivity.

Key words: social worker, professional ethics, change of social workers' ethics, dual relationship

[논문 접수일 : 12. 05. 31, 심사일 : 12. 06. 11, 게재 확정일 : 12. 07. 19]